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2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5월 14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정부는 2020년 4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·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,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」을 발표하였음.
- 이에 동작구도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행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
2. “경비원 등 근로자”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입주자 등”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, 입주자대표회의(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4. “기본시설”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) 및 냉·난방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)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

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)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에어컨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
2.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
3.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
4.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 및 시정권고)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·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7조(인권 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